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1991.	4.	11.	조례	제1109호
개정	1992.	3.	12.	조례	제1160호
개정	1992.	11.	30.	조례	제1215호
개정	1994.	8.	12.	조례	제1319호
개정	1995.	8.	21.	조례	제1376호
개정	1996.	2.	13.	조례	제1420호
개정	2000.	3.	2.	조례	제1681호
개정	2000.	4.	1.	조례	제1690호
개정	2004.	2.	27.	조례	제1858호
개정	2005.	10.	26.	조례	제1965호
개정	2006.	6.	28.	조례	제2004호
개정	2008.	1.	3.	조례	제2071호
일부개정	2013.	1.	8.	조례	제2447호
일부개정	2014.	12.	30.	조례	제2582호
일부개정	2017.	11.	16.	조례	제2883호
일부개정	2019.	3.	5.	조례	제3023호
일부개정	2022.	5.	19.	조례	제3411호(「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안양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9.>

[전문개정 2013. 1. 8.]

제2조(의정활동비) 안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3. 1. 8.>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0,000원과 보조활동비 200,000원으로 하고 안양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4. 2. 27.>

제4조(월정수당)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월정수당을 안양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 6. 28., 2008. 1. 3., 2013. 1. 8., 2014. 12. 30., 2019. 3. 5.>

제5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계산방법)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 금액 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6. 6. 28., 2013. 1. 8.>

제6조(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7조(여비지급기준) 의원의 여비 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9. 3. 5.]

제8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 11. 16.]

제9조(여비지급에 대한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안양시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6. 6. 28.>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7. 11. 16.]

부칙

①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안양시의회의원비용변상조례를 이를 폐지한다.

부칙 <92. 3. 12. 조례 제1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 11. 30. 조례 제1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8. 12. 조례 제1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 8. 21. 조례 제1376호>

이 조례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2. 13. 조례 제1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 2. 조례 제1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 4. 1. 조례 제1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 2. 27. 조례 제1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 10. 26. 조례 제1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 28. 조례 제20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

부칙 <2008. 1. 3. 조례 제2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 1. 8. 조례 제24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12. 30. 조례 제2582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16. 조례 제2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3. 5. 조례 제3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 5. 19. 조례 제3411호,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존 [별표 1] 및 [별표 2] 삭제 <2019. 3. 5.>

[별표] <신설 2019. 3. 5.>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4조 관련)

구 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2019년	월 2,700,940원
2020년	2019년 월정수당에 2019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90%를 합산한 금액
2021년	2020년 월정수당에 2020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90%를 합산한 금액
2022년	2021년 월정수당에 2021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90%를 합산한 금액